

## 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[별표 6]

### 비용산정기준(제36조관련)

#### 1. 공사비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.

#### 2. 조사비

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,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.

#### 3. 설계비

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,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.

#### 4. 보상비

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·입목·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.

#### 5. 그 밖의 비용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,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(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)까지의 자본비용,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, 다른 법령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.

#### ※ 비 고

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·도로·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
- 다. 태풍·해일·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
- 라. 문화재발굴,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